



기획특집 ①

폐기물관리 정책방향



양방철 / 환경처 폐기물제도과장

1. 폐기물발생억제 및 감량화

가. 폐기물의 예치금제 및 부담금제도의 확대 시행

폐기물처리의 기본은 발생을 억제하는 감량화이다. 정부에서는 폐기물감량화를 위한 경제적 유인책의 하나로 폐기물의 회수처리가 용이한 제품·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조·수입한 제품 등의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예치케 한 후 자체적으로 당해 폐기물을 회수·처리한 경우 그 실적에 해당되는 예치금을 반환하여 주는 예치금제도의 대상품목을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등 13개품목으로 조정하였으며, 환경위해요인으로 작용되거나 폐기물의 재활용가치가 아주 낮아 현실적으로 소비자에 의한 회수처리가 불가능한 제품·용기(살충제·유독물 용기, 부탄가스용기, 형광등, 검등 9개품목)에 대하여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비용 부담금제도를 도입한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시행령을 '93. 6.24 일 공포·시행중이며, 이의 성과를 보아가면서 예

치금·부담금의 대상품목확대 및 요율의 현실화를 통하여 감량화의 실효성을 높혀 나갈 계획이다.

나.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과대포장 추세가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에 큰 몫을 하고 있고, 포장재질로 플라스틱류의 사용이 늘어나 그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제품의포장방법및 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을 제정하여 식품류(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호식품), 잡화류(화장품, 세제류, 완구·인형류), 종합제품(1차식품·식품류·잡화류)등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회수 제한, 포장재의 재질기준 설정, 포장용기의 재사용규정, 포장폐기물의 감량화 촉진등 포장폐기물의 감량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 폐기물 수거료제의 개선

현재의 폐기물수거료제도는 일반가정의 경우에는 건물면적과 재산세를 기준으로 한 등급에 따라 일정액을 고정하여 부담시키고 있고, 사업장의 경우에는 쓰레기 배출량과 사업장면적을 기준으로 수거료를 부과하고 있어 쓰레기배출량과는 무관하고 또 수거료가 폐기물처리비용의 14.2%에 불과한 낮은 수준으로 일반국민들은 쓰레기처리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못하여 쓰레기감량과 재활용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쓰레기처리수수료 부과방식을 배출량 기준으로 하는 종량제로의 전환을 추진중에 있고 대형폐기물과 다량배출자의 쓰레기수거료도 동시에 현실화하여 '97년까지는 현행 수수료율 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여, 수거·운반처리비의 60%까지 현실화할 계획이다. 수거료제도를 이렇게 개선하면 감량화 효과와 함께 쓰레기처리 재원도 확보되어 위생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2. 폐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촉진

가. 분리수거제의 정착

분리수거제의 근본목적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을 따로 분리하여 재활용·재이용함으로써 폐기물의 자원화를 기함과 아울러 매립지등 처리시설로 가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하여, '91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분리수거제를 활성화하여 조기에 정착시키고 한국자원재생공사에 폐기물 유통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재생가능폐기물의 발생과 수요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정보자료등을 분석·정리하여 폐기물의 배출자와 재생이용자에게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재생 및 자원가능폐기물의 원활한 교환이용을 촉진하여 재활용폐기물의 유통관리 및 수급안정을 기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의 중추기지로 활용하여 나아갈 것이다.

나. 폐기물 재활용단지 및 재활용 폐기물 비축기지 설치 추진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한 곳에 단지화함으로써 상호보완 효과를 기하고 재활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단지 조성사업을 시범실시한 후 그 성과를 보아 타지역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국자원재생공사로 하여금 재활용폐기물의 수급안정비축제도(Buffer Stock Scheme)를 실시케 하며, 재활용 및 자원화가능폐기물을 공급과잉 및 수요감소시에 다량 구입하고 공급부족 또는 성수기에 이를 방출함으로써 재활용자원의 수요공급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재생제품의 시장안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일정비율의 재생제품 조달을 의무화하고, 폐기물의 재활용 및 적절한 처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재활용 폐기물의 구입과 비축, 예치금의 환불, 그리고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설치와 기술개발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촉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생활쓰레기의 연평균 증가율 8%보다 배이상 높은 연평균 16.2%씩 증가하고 전체쓰레기의 1/3을 차지하고 있어 수거·운반·처리에 많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대형음식점, 집

단급식소, 호텔등 음식물쓰레기를 다량발생하는 업소에는 이러한 쓰레기를 고속으로 퇴비화하거나 사료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므로써 쓰레기의 감량화와 재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3. 폐기물 적정처리 강화

가. 폐기물의 위생처리 확대

과거의 비위생매립지의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쓰레기매립지를 혐오시설로 인식한 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매립시설의 입지를 구하기가 어려워져 매립지를 광역화, 대규모화하여 침출수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위생매립시설을 '97년까지 14개소를 설치추진하고 이와 병행하여 시·군이 자체적으로 건설할 필요가 있는 시·군에 143개소에 단독위생매립지도 위생적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매립지로 가는 폐기물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소각시설의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현재 1.6%에 머물고 있는 쓰레기 소각율을 '97년까지 14.2%로 제고시키기 위하여 14기의 소각로를 건설하여 하루 12,000톤의 가연성쓰레기를 소각하고 이때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열병합발전도 병행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는 신도시개발의 경우 도시기반시설로서의 소각로설치를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형소각로 입지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상가, 빌딩, 학교, 제조업체등의 가연성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직접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기간이 짧고 설치비가 저렴한 중·소형 소각시설 설치도 확대·보급할 계획이다.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확대

폐기물의 적정처리에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재원이 뒤따르나, 현재 쓰레기의 처리책무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형편이다.

현재 국고 또는 재특지원액은 광역매립지의 경우 시설비의 50%를 국고지원, 소각시설은 시설비의 30%를 재특융자하고 있으나 앞으로 광역매립지와 단독매립지는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를

50-70%로 차등지원하는 방안과 소각시설도 재특융자외에 20%의 국고지원을 추진중이며, 국고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양여금이나 폐기물관리기금에서의 지원방안도 검토중이다. 또한 쓰레기수수료를 종량제로 전환하여 수거운반비의 60%까지 현실화 할 경우 상당부분 재원 충당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확보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역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 복리증진, 사회복지등의 지원을 제도화하고 시설 설치·운영시 정기적인 환경영향조사를 실시·공개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위생적인 시설임을 인식시켜 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4. 사업장폐기물의 자가처리강화

폐기물처리는 발생자가 스스로 처리한다는 원칙하에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연간 폐기물발생량 2만톤이상 또는 조성면적 50만m²이상의 신규공단이나 연간 폐기물발생량 1만톤이상 또는 조성면적 15만m²이상의 신규공장 설립시에는 자체 폐기물처리장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30대 계열기업등 대기업에 대하여는 폐기물의 자체처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폐기물배출자, 전문처리업소, 재활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폐기물이 부적정처리되거나 불법투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법규 위반시에는 처벌 및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중 배출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의 양이 일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 폐기물에 대한 자가처리의무를 부여하고 소형소각로 설치확대방안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